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996
----------	------

2024. 09. 06.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2. 이민석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 8. 14.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9. 6.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이민석 의원)

1. 제안이유

- 건축물의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 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 및 정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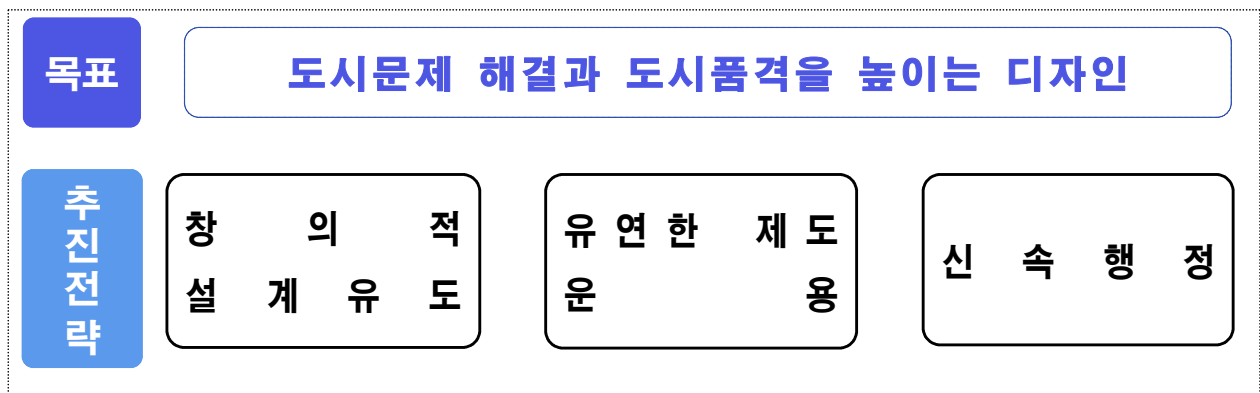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 다.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운영 기준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9조)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작년 2월 발표한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책의 성공적 실행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요건, 절차, 위원회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년 8월 12일 이민석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울시는 작년 발표(검토보고서 붙임2 참조) 이후 2023년 3월 3일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1호)를 수립하였고, 방침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23년 6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6차례 개최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개소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음¹⁾.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방안 3대 전략 7대 추진과제>



1) 1차 선정('23.8~'24.3) : 10개소, 건축혁신형 사전협상(리버사이드 호텔 부지, 잠원동 소재) 1개소 포함
2차 선정('24.5) : 6개소 (검토보고서 붙임3 참조)

추진과제

- ① 先디자인後사업계획
- ② 공사비 현실화
- ③ 건축가 위상제고

- ④ 서울형 용도지역제
- 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 ⑥ 불필요한 규제 개혁

⑦ 통합심의

<도시·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경위>

- '23. 2. 9. :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기자설명회
- '23. 3. 3. :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1호)
- '23. 4.19. :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시행공모
- '23. 6. 9. :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구성·운영
- '23. 6.19. :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
- '23. 8.28. :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6개소 선정)
- '23. 9.12. :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2개소 선정)
- '23.11.30. : 제4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1개소 선정)
- '24. 3.11. : 제5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1개소 선정)
- '24. 4.30. : 제6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2차 시범사업 6개소 선정)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이하 "혁신사업")은 서울의 건축디자인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다변화와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²⁾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³⁾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임.
- '혁신사업'의 방식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용적률 적용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계획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 허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 등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고 있음.

- 혁신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방식별로 법적절차의 이행이 전 단계인 사업(건축)계획안 작성부터 해당 위원회의 심의와 인·허가의 모든 과정에서 혁신디자인 요소가 반영·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디자인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혁신사업 선정과 자문을 위하여 운영 중인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는 현재 방침으로 운영 중이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협의,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서 기능하고, 위원회 운영 예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임.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칙, 사업 대상지와 절차, 위원회의 설치·운영, 사업 운영기준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분	조 항	내 용
제 1 장	목적, 정의,	· 도시 품격 제고 및 건축문화 발전

구 분	조 항	내 용
총 칙	시장 책무 등	· 디자인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 2 장 사 업 관 련	사업지 선정대상, 방법 등	· (대상) 정비사업 제외 · (방법) 민간공모 또는 사전협상, 역세권활성화 등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가능
	사업제안서 제출 등	·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사업제안서 제출 의무
	사업시행 제안 등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 디자인혁신 사업 시행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의무
제 3 장 위 원 회	기능 및 구성, 운영 등	· (역할) 사업대상지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 용적률 완화 등 · (구성) 10인 이내 : 총괄건축가,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 (운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 4 장 보 칙	운영기준	·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은 작년 4월 시범사업 공모 시 설명한 내용을 반영⁴⁾하였고,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혁신디자인으로 인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음.
- 다만, 사업을 정의하기 위해 인용한 안 제5조는 ‘사업’이 아닌 ‘대상지’를 설명하는 사항이므로 일부 지구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이란 일률적, 획일적 건축디자인을 벗어나 창의적·혁신적 형태와 다양한 공간환경을 조성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09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중 공모의 목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서 감성디자인 수도로서의 시민의 생활과 도시품격 향상을 유도하여 문화·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을 전파하고자 함.’

의 적용 없이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들 사업이 별도 조례에 따른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차적 효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3)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9조)

- 안 제9조는 안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수립토록 한 것임.

제 정 안
<p>제9조(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연결해 누구나 자유롭게 교류하고, 지역과의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 공간구조 조성 2. 사람을 중심으로 명상, 조망, 휴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 서정적 감성이 적용된 디자인 방안 제시 3. 지역의 다양한 환경조건과 조화로운 경관을 담는 디자인 구현 4.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으로 도시 감성문화 창조 5. 미래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건축공간 계획 6. 도시의 품격과 공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공간 계획

- 집행기관은 시범사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우선 수립하여 운용 중으로, (검토보고서 붙임5 참조) 현행 가이드라인 중 ‘감성디자인’의 평가부분에는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심사위원의 관점과 정책변화에 따라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지 않도록 정량화 또는 구체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1.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역을 포함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4)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안 제10조~제18조)

-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혁신사업의 추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6).
- 다만, 안 제12조의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해촉7)이 가능한 바,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시장이 직권 해촉할 수 있도록 해당조문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임.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p> <p>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p>	<p><삭 제></p>

(5) 운영기준 등(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제정조례안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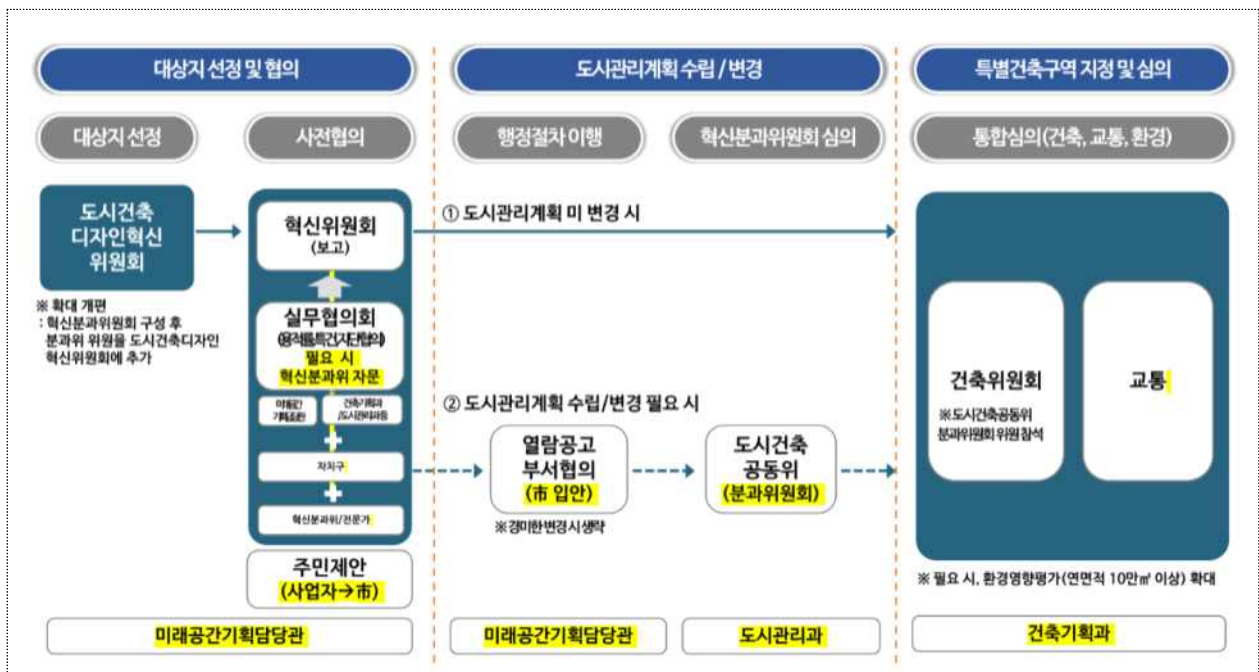
6)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사업을 기 시행중인 집행기관에서는 공모를 통한 대상지 발굴, 위원회를 통한 대상지 선정, 서울시·자치구, 사업자,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 용적률 적용 적정성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통합심의에 상정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추진절차>



(6)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안 부칙 제2조는 해당 조례 제정 이전에 진행 중이던 시범사업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사항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의 절차적·계획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 시행되는 조례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규정으로 경과조치⁸⁾가 아닌 적용례⁹⁾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8)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종전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의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적 이행에는 혼란을 방지하는 조치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디자인혁신 사업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조(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중인 디자인혁신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집행기관은 조례에서 위임한 가이드라인과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제안에 의해 시작되는 사업 성격을 감안할 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지원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9) 과거부터 신법 시행 당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 중 어느 시점이나 단계부터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

VI. 수정안의 요지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함(안 제2조제 2호).
-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2조), 조문의 순서를 정비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부칙의 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를 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함(안 부칙 제2조).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96
----------	------------

제안일자 : 2024. 9. 6.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함(안 제2조제 2호).
-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2조), 조문의 순서를 정비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부칙의 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를 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함(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추진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이하 “디자인혁신 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 통한 건축디자인 개선 및 미래의 환경 변화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u>추진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u></p> <p><u>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p> <p>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p> <p><u>제13조 ~ 제19조 (생 략)</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제5조에 해당하는 지역</u> <u>에서 추진하는 사업</u>-----.</p> <p><u><삭 제></u></p>
<p>부 칙</p>	<p>부 칙</p>
<p><u>제2조(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u> <u>이 조례 시행 당시 디자인혁신 사업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u></p>	<p><u>제2조(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적용례)</u> 이 <u>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u></p>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이란 일률적, 획일적 건축디자인을 벗어나 창의적·혁신적 형태와 다양한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맥락에 순응적인 디자인을 유도하여 문화·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이하 “디자인혁신 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 통한 건축디자인 개선 및 미래의 환경 변화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제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혁신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구현 및 우수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혁신 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5조(사업 대상지 선정 등) ① 디자인혁신 사업 대상지(이하 “사업 대상지”라 한다)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다만, 존치관리구역은 예외로 한다.

③ 사업 대상지는 공모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협상 대상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디자인혁신 사업 선정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제6조(사업제안서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디자인 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

기관 및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제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례 등의 사항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제8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연결해 누구나 자유롭게 교류하고, 지역과의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 공간구조 조성
2. 사람을 중심으로 명상, 조망, 휴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 서정적 감성이 적용된 디자인 방안 제시
3. 지역의 다양한 환경조건과 조화로운 경관을 담는 디자인 구현
4.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으로 도시 감성문화 창조
5. 미래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건축공간 계획
6. 도시의 품격과 공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공간 계획

제3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디자인혁신 사업의 추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 적용 및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3. 시에 설치·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 내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속기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18조(운영기준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디자인혁신 사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